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689호

2021.6.29.(화)



목 차

◆ 고 시

제2021-307호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	2
--	---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07호

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지역에서의 집회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6월 29일
서울특별시 장

□ 집회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

가. 금지대상 : 서울특별시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50인 이상의 집회

- 2020.2.27.자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85호 ‘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내 집회 제한 고시’ 및 2020.11.23.자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88호 ‘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’는 2021.7.1.(목) 00시부터 해제함

※ 집회는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

나. 금지기간 : 2021년 7월 1일 00시부터 7월 14일 24시까지

다. 위반시 처벌 :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
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)

라. 49인 이하 집회의 경우, 다음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.

- ① 집회 참여자에 대한 체온 측정을 실시 할 것(37.5도 이상인 자는 참여 불가)
- ② 집회 주최자는 참여자 명부(연락처, 시군구명)를 작성하여 2개월간 보관할 것
- ③ 집회 참여자 모두 마스크를 계속 착용 할 것
- ④ 집회 장소내 개인 간 2m 이상 거리두기를 이행하고, 주변 다른 집회와도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집회를 개최 할 것
- ⑤ 집회가 종료되면 참여자는 즉시 해산할 것
- ⑥ 집회 참여인원이 50인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고, 조치가 불가능 할 경우 즉시 집회를 중단하고 해산 할 것
- ⑦ 집회 주최자는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관청의 조치에 협조할 것

마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

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바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사. 담당부서: 서울특별시 행정국 총무과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